

[별표 9] <개정 2011.4.6>

수수료(제51조제1항관련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  | 가.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: 2만원<br>나.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: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|
| 2.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  | 가.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: 5천원<br>나.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: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|
| 3.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                     | 5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                     | 가.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: 2만원<br>나.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: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|
| 5.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(신청에 의한 지정에 한한다) | 가.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: 2만원<br>나.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: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|
| 6. 삭제 <2007.7.27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신고                   | 5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                      | 5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

농림어업인은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.